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1차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정치 교육
시책 수립·실시 의무 부여 〉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3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인선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0.
3. 회부연월일 : 2024. 10.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교육, 기후변화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 및 정치 분야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경제 및 정치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올바른 경제관념 및 건전한 정치의식의 함양은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큼에도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과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2조의5(경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신설>	<u>제22조의6(정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전한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

현행 「교육기본법」 제3장 제17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 증진, 학습윤리 확립, 생명존중의식 함양 등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1)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제18조(특수교육), 제19조(영재교육), 제20조(유아교육), 제21조(직업교육), 제22조(과학·기술교육),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3(진로교육), 제22조의4(학교체육)

2022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에 따를 때 현재 “경제”와 “정치”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으나 해당 과목은 학생이 선택하는 사회과 진로 선택 과목에 속함. 이에 개정안은 학생의 선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경제교육과 정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경제·정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현재 경제교육 및 정치교육에 관한 법령 및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에 대한 경제교육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경제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 의해 경제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의 임무 등이 규정되고 있으며²⁾, 해당 법률에 따라 각 시·도 및 교육청에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경제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시·도 및 교육청	조례명	시·도 및 교육청	조례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금융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라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대구광역시	경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주)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 및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행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교육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정치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대다수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서 학생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다만, 정치교육은 경제교육에 비해 그 내용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치교육의 경우 수업 내용이 시·도교육감과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업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시·도 및 교육청	조례명	시·도 및 교육청	조례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전라남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주)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 및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행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이미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치교육에 관하여는 학생의 건전한 정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 등에 근거하여 교과 및 범교과 학습 주제 등의 형태로 학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중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교육에 필요한 별도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력 부담과 자율성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6